

##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료관광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 한다)”이란 충청북도 소재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 한다)”란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중전의 제3호) 중 “**전문인력**”이란”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환경·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을 삭제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의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로 하고, 제1호 중 “**홍보마케팅 활동**”을 “**홍보마케팅**”으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관광 국외홍보관 설치·운영

4.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제5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역서비스, 픽업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중전의 제5조) 제1항 중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② 선도의료기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10%이하를 선정한다.

제6조제3항(중전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의 제7조를 제10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사람에 대하여,” 를 “국내의 인사를” 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관광 종합안내 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종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2. 통역·번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안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7조) 중 “기관” 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 중 “기관·법인, 단체에게 자료나·의견” 을 “기관  
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에 따른 종합안내센터 운영 업무
3.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의료관광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p>3. “의료관광 <u>전문인력</u>“이란 충청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외국인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환자와 함께 온 사람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5. ----- <u>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u>“이란 ----- ----- ----- ----- -----.</p> <p>6.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하 “<u>선도의료기관</u>“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u>의료시설·환경·의료 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u></p>
<p>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u>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1. 2. 3. 4. (생략)</p> <p>&lt;신 설&gt;</p>	<p>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u>다음 각 호의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u></p> <p>1. 2. 3. 4. (현행과 같음)</p> <p>② <u>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운영)</u>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4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u>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u>홍보마케팅 활동</u></li> <li>2. (생략)</li> <li>3. <u>의료관광 홍보관 등 설치·운영 사업</u></li> <li>4. 그 밖에 <u>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u></li> </ol>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u> --- ----- ----- <u>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홍보마케팅</u></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의료관광 국외홍보관 설치·운영</u></li> <li>4. <u>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u></li> <li>5. <u>통역서비스, 픽업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li> <li>6. 그 밖에 <u>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u></li> </ol>

제5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 27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치실적 등 사업추진능력 및 사후관리능력
2. 홍보, 외국인 전담인력 등 조직, 시설 현황
3. 그 밖에 의료관광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  
-----  
-----  
-----  
-----  
-----.

② 선도의료기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10%이하를 선정한다.

③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p><u>제6조(의료관광 홍보대사) ①</u>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의료관광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u>사람에 대하여,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u></p> <p><u>②</u>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u>제7조(의료관광 홍보대사) ①</u> --- ----- ----- ----- <u>국내외 인사를</u> ----- -----.</p> <p><u>②</u>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u>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u>」에 따른다.</p>
<p><u>&lt;신 설&gt;</u></p>	<p><u>제8조(의료관광 종합안내 센터 설치·운영) ①</u> 도지사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이하 “<u>종합안내센터</u>”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u>②</u> 종합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u></li> <li><u>2. 통역·번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u></li> <li><u>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u></li> </ol> <p><u>③</u>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p>

	<p><u>안내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7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u>관련 기관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u>할 수 있다.</p>	<p>제10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u>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u>할 수 있다.</p>
<p>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u>기관·법인, 단체에게 자료나·의견 제출</u>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1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 ----- ----- <u>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u> ----- -----.</p>
<p><u>&lt;신 설&gt;</u></p>	<p>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u>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u>할 수 있다.</p>
<p>제9조 (생략)</p>	<p>제13조 (현행 제9조와 같음)</p>

<p>&lt;신 설&gt;</p>	<p>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u>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u>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u>업무</u></li> <li>2. 제8조에 따른 <u>종합안내센터 운영 업무</u></li> <li>3. 제9조에 따른 <u>전문인력 양성 교육 업무</u></li> <li>4. 그 밖에 <u>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u></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p>
<p>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의료관광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p>